

[제 1348 호]

2017년 2월 14일(화)

고양시보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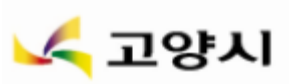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17-50호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1
------------------	---------------------------	---

공 고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7-33호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2
--------------------------	---------------	---

Goyang City



| 발행 : 고 양 시 | 편집 : 공보담당관 |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600) | ☎ (031) 8075-2095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될 소하천 예정지를 폐지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2월 일

고 양 시 장

수계(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 예정지		
		지번 및 지목	면적(m ²)	지정(변경·폐지) 사유
창릉천	셋말천	53-67 대	143.6	소하천정비법 제4조 4항에 의거하여 소하천예정지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소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여 그 지정의 효력 상실
창릉천	셋말천	53-68 잡	138.6	

- 첨부서류 1. 소하천 예정지로 포함된 세목조서
2. 해당 소하천 예정지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2. 공고기간 : 2017.02.14. ~ 2017.03.02.(16일간)
3. 공고대상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참조
4.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의문 사항은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2팀 (☎031-8075-47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1부.

2017. 02. 14.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장

은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대번호	은행정지명령 사유	은행정지명령일자	비고
1	39러1942	그랜저XG	KMHFV41CPYA085735	소유자 신청	2017.02.06	
2	10주4017	마티즈 0.8S MT	KLYKF484D7C209815	소유자 신청	2017.02.08	
3	10주4021	마티즈 0.8S MT	KLYKF484D7C226639	소유자 신청	2017.02.08	
4	63소8075	싼타페	KMHSJ81WP7U213678	소유자 신청	2017.02.08	
5	경기73로1771	트라제XG	KMJMFH7NPLYU054877	소유자 신청	2017.02.08	
6	12무0168	제네시스	KMHGL41DBGU095787	소유자 신청	2017.02.09	
7	51우6198	300C	1C3H8E3G48Y103263	상속권자 신청	2017.02.10	

